

연구비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5년 7월 28일

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印

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칙 제2025-2호

제27조(연구비 선급금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관리기관은 연구비가 연구기간 외에 입금되는 등 연구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비를 제외한 연구비 총액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종료 후 전액이 입금될 경우 : 착수시점에 연구비 총액의 50%이내에서, 연구수행기간1/2 경과 후 연구비 총액의 50%이내에서 각각 선급금 허용
2. 종료 후 잔금이 입금될 경우 : 잔금 범위 안에서 선급금 허용
3. 지원기관 선 정산(간접비 포함) 요구 및 연구기간 6개월 미만의 경우 : 연구비 전액까지 선급금 허용
4. 계약체결 후 연구비 입금이 지연될 경우 :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한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쳐 선급금 허용

② 연구책임자는 선급금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선급금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선급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산학협력단 자금 운영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하고,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교부되는 즉시 동 지원금액과 상계조치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구비가 지원기관으로부터 교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.

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와 같이 한다.(연구비 선급금 신청서)

부칙(2025. 7. 28 . 산학협력단 규칙 제2025- 2 호)

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7조(연구비 선급금) ① 관리기관은 연구비가 연구기간 외에 입금되는 등 연구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<u>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	제27조(연구비 선급금) ① ----- ----- ----- <u>간접비를 제외한 연구비 총액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종료 후 전액이 입금될 경우 : 착수시점에 <u>연구비 총액의 50%이내에서, 연구수행기간 1/2 경과 후 연구비 총액의 50%이내에서 각각 선급금 허용</u> 2. 종료 후 잔금이 입금될 경우 : 잔금 범위안에서 선급금 허용 3. 지원기관 선 정산(간접비 포함) 요구 및 연구기간 6개월 미만의 경우 : <u>연구비 전액까지 선급금 허용</u> 4. 계약체결 후 연구비 입금이 지연될 경우 : <u>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한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쳐 선급금 허용</u>
② 연구책임자는 선급금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<u>선급금 신청서 및 보증각서를</u>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선급금 신청서를</u> -----.
③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선급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<u>간접비에서</u> 우선 이체하여 지원하고,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교부되는 즉시 동 지원금액과 상계조치 하여야 한다, 다만, 연구비가 지원기관으로부터 교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<u>산학협력단 자금 운영 범위내에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지 제6호 서식] 연구비 선급금 신청서 [연구과제 기본정보] <table><tr><td>과제번호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<tr><td>연구책임자</td><td>(소속) 대학 전공</td><td colspan="2">(성명)</td></tr><tr><td>지원기관명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<tr><td>사업명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<tr><td>연구과제명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<tr><td>총연구기간</td><td></td><td>총연구비</td><td>원</td></tr><tr><td>당해연도연구기간</td><td></td><td>당해연도연구비</td><td>원</td></tr><tr><td>연구비입금액</td><td colspan="3">1차(% 천원), 2차(% 천원)</td></tr><tr><td>연구비입금액예정</td><td colspan="3">20년월일 원 (입금기관:)</td></tr></table> [신청내역] <table><tr><td>지원신청액</td><td>원</td><td>지원확정액</td><td>원 ※산학협력단 담당자가 기재</td></tr><tr><td>신청내역</td><td colspan="3">☐ 인건비, ☐ 직접비 (해당항목 체크)</td></tr><tr><td>반환예정일</td><td colspan="3">연구비 잔금 입금 시 (년월까지)</td></tr><tr><td>확약사항</td><td colspan="3">상기 선급 지원 받은 연구과제의 연구비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선 지급된 연구비 전액에 대하여 연구책임자가 책임지고 返済할 것을 확약합니다. (대학, 산학협력단에서 지원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에서 返済 포함)</td></tr></table> 년월일 연구책임자 : (자필서명)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	과제번호				연구책임자	(소속) 대학 전공	(성명)		지원기관명				사업명				연구과제명				총연구기간		총연구비	원	당해연도연구기간		당해연도연구비	원	연구비입금액	1차(% 천원), 2차(% 천원)			연구비입금액예정	20년월일 원 (입금기관:)			지원신청액	원	지원확정액	원 ※산학협력단 담당자가 기재	신청내역	☐ 인건비, ☐ 직접비 (해당항목 체크)			반환예정일	연구비 잔금 입금 시 (년월까지)			확약사항	상기 선급 지원 받은 연구과제의 연구비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선 지급된 연구비 전액에 대하여 연구책임자가 책임지고 返済할 것을 확약합니다. (대학, 산학협력단에서 지원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에서 返済 포함)			[별지 제6호 서식] 연구비 선급금 신청서 [연구과제 기본정보] <table><tr><td>연구책임자</td><td>(소속) (성명)</td></tr><tr><td>지원기관명</td><td></td></tr><tr><td>연구과제명</td><td></td></tr><tr><td>당해연도연구기간</td><td>당해연도연구비 원</td></tr><tr><td>연구비입금액</td><td colspan="3">1차(% 천원), 2차(% 천원)</td></tr></table> [신청내역] <table><tr><td>지원신청액</td><td>원</td><td>지원확정액</td><td>원 ※산학협력단 담당자가 기재</td></tr><tr><td>신청내역</td><td colspan="3">예시) 인건비 원, 직접비 원</td></tr><tr><td>신청사유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<tr><td>반환예정일</td><td colspan="3">연구비 잔금 입금 시 (년월까지)</td></tr><tr><td>확약사항</td><td colspan="3">상기 선급 지원 받은 연구과제의 연구비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제27조에 의거 선 지급된 연구비 전액에 대하여 연구책임자가 책임지고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.</td></tr></table> 년월일 연구책임자 : (자필서명)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	연구책임자	(소속) (성명)	지원기관명		연구과제명		당해연도연구기간	당해연도연구비 원	연구비입금액	1차(% 천원), 2차(% 천원)			지원신청액	원	지원확정액	원 ※산학협력단 담당자가 기재	신청내역	예시) 인건비 원, 직접비 원			신청사유				반환예정일	연구비 잔금 입금 시 (년월까지)			확약사항	상기 선급 지원 받은 연구과제의 연구비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제27조에 의거 선 지급된 연구비 전액에 대하여 연구책임자가 책임지고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.		
과제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책임자	(소속) 대학 전공	(성명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기관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업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과제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연구기간		총연구비	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당해연도연구기간		당해연도연구비	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비입금액	1차(% 천원), 2차(% 천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비입금액예정	20년월일 원 (입금기관: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신청액	원	지원확정액	원 ※산학협력단 담당자가 기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내역	☐ 인건비, ☐ 직접비 (해당항목 체크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반환예정일	연구비 잔금 입금 시 (년월까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확약사항	상기 선급 지원 받은 연구과제의 연구비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선 지급된 연구비 전액에 대하여 연구책임자가 책임지고 返済할 것을 확약합니다. (대학, 산학협력단에서 지원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에서 返済 포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책임자	(소속) (성명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기관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과제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당해연도연구기간	당해연도연구비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비입금액	1차(% 천원), 2차(% 천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신청액	원	지원확정액	원 ※산학협력단 담당자가 기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내역	예시) 인건비 원, 직접비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반환예정일	연구비 잔금 입금 시 (년월까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확약사항	상기 선급 지원 받은 연구과제의 연구비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제27조에 의거 선 지급된 연구비 전액에 대하여 연구책임자가 책임지고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연구비 관리지침 일부 개정(안)

◆ 개정이유 ◆

- 교외연구비 연구수행의 원활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기간 외에 연구비 선급금을 지원하고 있으나, 현행에 맞게 연구비 선급금 지침을 개정하고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

◆ 주요내용 ◆

- 연구비 총액 범위 내에서 선급금 지원 기간 및 한도액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
- [별지 제6호 서식] 「연구비 선급금 신청서」 서식 보완